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3. 주요내용

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의4)

※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7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 ----- -----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u>골프 연습장업</u>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u>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u> 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4. ----- ----- ----- <u>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u> ----- ----- <u>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u> 영업에 한정한다.----- -----
7의5.·8. (생략)	7의5.·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 205 - 7453